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건축주					
대지위치					
전체 개요	건축면적			연면적 합계	
	동별	구조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동별 개요					
종전 존치기간	연장 존치기간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서에 따라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을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